

독일의 감사제도

연방회계감사원을 중심으로

양현모,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독일의 연방 감사기관인 연방회계감사원의 지위 및 감사위원의 신분, 주요 기능은 독일 기본법 제114 조 제2 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해 연방회계감사원은 그 어느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법관과 같은 독립성을 보장받고, 예산과 재정운용의 경제성과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와 모든 연방행정기관의 예산과 경제운용을 감사한다. 즉, 연방의 수입과 지출, 예산 지출의 경제성과 효율성, 연방의 재산과 부채 현황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사한다. 더불어 연방회계감사원은 각 부처들이 연방예산법에 따라 재정관리 규정과 원칙을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자금을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매년 연방의회와 연방상원 그리고 연방정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보고하는데 그 보고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과 권고사항, 관련부서의 해명, 위원회의 결정, 검사성과 또는 현재 상황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연방부처와 행정기관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조치 사항을 연방회계감사원과 연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공직자가 규정이나 형법을 위반한 경우,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검사나 판사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법원에서는 규율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각 주에서도 감사기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주회계감사원이다. 주회계감사원의 법적 지위, 주요 임무와 역할 등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단지 주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모든 주회계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주 행정부 또는 입법부 및 연방회계감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한다.

2014년 7월

I. 독일연방회계감사원의 연혁과 지위

1. 연혁

독일의 감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프로이센 시대 ‘일반회계감사청’이 설치된 이후였다. 1713년 강력한 프로이센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즉위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강한 프로이센의 건설을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1714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회계감사기관인 ‘일반회계감사청’을 베를린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일반회계감사청은 독립된 기관이었지만 왕의 직속기관이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왕에게 보고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등 독립된 회계 감사기관으로서의 한계도 가지고 있었다.

1945년 독일이 패전하고 연합국 군정이 실시되는 가운데 1948년 프랑크푸르트에,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점령지역의 국가, 즉 서부독일 건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 및 경제 감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통합경제지역 회계감사원’이, 그리고 이를 모태로 하여 1950년 오늘날의 연방회계감사원이 설립되었다.

1985년 ‘연방회계감사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을 통해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 최고 행정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권한과 감사 업무의 절차 등이 보다 더 명확히 규정되었다. 1998년 연방회계감사원은 더 광범위하고 정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9개 도시에 소속기관인 회계감사청을 설치, 운영하다가, 2012년 12월 쾰른과 막테부르크에 있는 회계감사청은 폐지하였다. 2000년 7월 1일 이후 연방회계감사원 본부는 본에 있으며, 구동독 지역인 포츠담에 제2 청사를 두고 있다.

2. 연방회계감사원의 법적 근거와 지위

독일의 연방 감사기관인 연방회계감사원의 지위 및 감사위원의 신분, 주요 기능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는 독일 기본법 제114 조 제2 항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위원은 법관과 같은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연방회계감사원은 예산과 재정운영의 경제성과 적법성 등에 대해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연방회계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매년 연방정부, 연방의회, 연방상원에 보고하지만, 그 어느 국가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연방 감사기관인 연방회계감사원의 지위 및 감사위원의 신분, 주요 기능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는 독일 기본법 제114 조 제2 항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위원은 법관과 같은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연방회계감사원은 예산과 재정운영의 경제성과 적법성 등에 대해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의 조직, 감사위원의 임명 및 의사결정 방법 등 회계 감사원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방회계감사원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계감사원의 내부 규칙으로는 직무와 감사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연방회계감사원의 조직에 대한 업무 분장과 감사 절차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독일의 연방회계감사원법 제1 조에 따르면 연방회계감사원은 헌법상 연방수상실, 연방대통령실 등과 동등한 연방 최고 행정기관이며, 재정 통제에 관한 독립기관으로서 오직 법률과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연방의회 및 연방상원 그리고 연방정부의 의사결정 활동을 지원한다.

독일의 연방회계감사원법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위원(원장, 부원장, 국장, 과장)에 대하여 법관과 동일한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위원들에게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에 의하지 않고서는 퇴임 또는 전보 조치가 불가능하다.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는 연방징계법원에서 결정한다. 의회 또는 정부가 연방회계감사원에 대해 특정 기관 또는 사업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방회계감사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연방회계감사원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그러나 연방회계감사원은 관례적으로 국민 대표 기관인 연방의회가 의뢰한 감사에 대해 대부분 응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회계감사원법 제1 조에 따르면 연방회계감사원은 헌법상 연방수상실, 연방대통령실 등과 동등한 연방 최고 행정기관이며, 재정 통제에 관한 독립기관으로서 오직 법률과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 II. 연방회계감사원의 임무 및 조직 체계 】

1. 연방회계감사원의 주요 임무와 역할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와 모든 연방행정기관의 예산과 경제 운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의 수입과 지출, 예산 지출의 경제성과 효율성, 연방의 재산과 부채 현황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의 주요 기준은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경제성이다. 재정운영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는 법률과 예산 계획 그리고 행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이며, 경제성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투입과 결과 산출에 대한 감사이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재정 지출이 법규와 행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정책 결과가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감사할 수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감사 기간과 방법 등도 스스로 결정하며, 감사사항의 선정과 감사 우선순위에 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재량으로 감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일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감사 기간과 방법 등도 스스로 결정하며, 감사사항의 선정과 감사 우선순위에 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재량으로 감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일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감사 사항을 선정하거나 감사 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부의 부서장 회의, 소합의부, 대합의부 등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연방회계감사원에 대해 특정 사항을 감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관례적으로 입법부의 제안을 수용하여 감사하기도 한다.

연방정부의 정치적 결정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즉,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정치적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2. 조직 구조

연방회계감사원은 본에 소개한 본부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산하 회계감사청으로 조직되어 있다. 근무 인력은 본부에 약 650명, 회계감사청에 약 800명이다. 회계감사청은 연방회계감사원이 연방 예산의 회계감사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베를린, 프랑크푸르크, 함부르크, 하노버, 코블렌츠, 뮌헨, 슈투트가르트 등 전국 7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연방회계감사원 소속기관으로서 연방회계감사원과 동일한 권한으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회계감사청의 감사 대상 업무는 교통, 국방, 도로, 보건 등 모든 연방 사무를 포함한다.

〈그림 1〉 독일 연방회계감사원(본부)의 조직도



자료: 독일 연방회계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bundesrechnungshof.d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방회계감사원(본부)은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이하 10개 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 중 총무국은 원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사, 총무, 홍보, 국제 업무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나머지 9개 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다. 실무 업무는 약 50개 영역으로, 과의 수와 일치한다.

제1 국은 재정 감사에 대한 기본적 사항, 예산법, 행정 개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 대한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

제2 국은 연방외무, 연방내무, 환경, 자연보호, 보건복지,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대통령, 연방의회 등 관련 업무

제3 국은 우정, 철도, 도이치 텔레콤, 연방은행 등의 분야에 대해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분야는 이전에 연방 사무에서 현재 민영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연방 재산이 남아 있는 분야이다.

제4 국은 국방(육해공군) 분야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5 국은 교통, 건설(도로, 건물) 분야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6 국은 연방 노동, 경제, 기술, 교육 및 연구 분야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7 국은 IT 분야, 연방 공무원의 인사 분야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8 국은 조세 분야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9 국은 연금, 사회복지 관세 등에 관해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각 국의 내부 조직은 1개의 업무조정과를 제외한 보통 5-6개의 실무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실무과가 연방의 감사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6 국의 경우 국장 밑에 7개 과가 있으며, 이들은 업무조정과 이외에 교육연구담당과, 노동사회 담당1과, 노동사회 담당2과, 경제기술담당과, 영양농업소비자보호담당과, 고용지원담당과 등 6개의 실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실무과는 과장 책임 하에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위원

1) 원장과 부원장

연방회계감사원의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국장과 과장급 인사를 총칭해서 '감사위원'라고 한다. 이들은 감사 업무를 포함한 연방회계감사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사항을 포함한 연방회계감사원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들 중심의 회의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연방회계감사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사법부의 법관과 유사한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임의로

연방회계감사원의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국장과 과장급 인사를 총칭해서 '감사위원'라고 한다.

이들은 감사 업무를 포함한 연방회계감사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사항을 포함한 연방회계감사원의 모든 의사결정이 이들 중심의 회의체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해고되거나 전보될 수 없다. 연방회계감사원의 원장은 연방회계감사원을 대표하고 일반적인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업무를 감독한다(연방회계감사원법 제6 조 제1 항). 그러나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원장이, 부원장도 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 국장이 대행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의 원장은 자동적으로 ‘연방 행정경제성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는데, 이는 바이마르공화국 이래 내려온 전통이다. 연방 행정경제성 전권위원회는 연방행정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자문하여 기타 조언을 하는 기관으로서, 연방회계감사원의 임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방 행정경제성 전권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행정 조직 및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위원장을 보좌하는 일부 인력과 사무소만 있을 뿐이다.

연방회계감사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연방정부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에서 토론 없이 투표로 선출되며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회계감사원법 제5 조 제1 항에 따라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결로 선출되는 과정이 중요하며 연방대통령의 임명은 다분히 형식적인 절차이다(연방회계감사원법 제5 조 제1 항). 이들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이유는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당 간의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연방회계감사원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연방회계감사원의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12년이며,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정년에 들어가야 한다. 즉, 임기 후 다른 공직에 임명되거나 중임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가 다른 국가에 비해 길고, 임기 후 바로 정년에 들어가도록 한 것 역시 연방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하나이다.

연방회계감사원의 원장과 부원장의 임기는 12년이며, 임기가 끝나면 바로 정년에 들어가야 한다. 즉, 임기 후 다른 공직에 임명되거나 중임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 국장과 과장 및 일반 직원

국장과 과장은 연방회계감사원장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연방회계감사원장은 이들에 대한 임명 제청 전에 반드시 연방회계감사원의 대합의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른 국장과 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연방회계감사원법 제5 조 제2 항). 이들 국장과 과장들은 독일 연방공무원상 고급직 공무원으로,¹ 다양한 전문직 경험을 가진 자여야 한다. 원장과 부원장 중 1인, 그리고 기타 국장과 과장급 감사위원의 1/3 이상은 법관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국장·과장급 감사위원 이외에 상급직과 중급직, 기타 하급직의 일반 직원을 두고 있다. 일반 직원은 보통 팀으로 직무

를 수행하는데, 이들 역시 독자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연방회계 감사원법 제6 조 제3 항).

4. 연방회계감사원의 의사결정 방식

1) 부서장 회의

독일 연방회계감사원의 의사결정은 합의제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의사결정은 담당 국장과 과장 2인으로 구성된 ‘2인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이 요구할 경우 원장 또는 부원장도 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3인 부서장 회의’라고 한다. ‘2인 부서장 회의’ 또는 원장이나 부원장이 참여한 ‘3인 부서장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안은 ‘소합의부’, ‘대합의부’ 등에서 순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부서장 회의에서는 전원 합의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1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소합의부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못한 사안은 소합의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연방회계감사원은 각 국별로 1개의 소합의부를 설치하고 있는데, 국장이 의장이 되고, 국 소속 과장 전원과 다른 국의 일부 과장이 참여하여 위원이 된다. 당해 국 소속이 아닌 과장으로서 소합의부의 위원이 되는 자 및 그 대리자는 원장이 임명한다(연방회계감사원법 제11 조). 원장이나 부원장도 소합의부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들의 의장이 된다. 소합의부의 의사결정은 다수결 결정에 의한다.

부서장 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못한 사안은 소합의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연방회계감사원은 각 국별로 1개의 소합의부를 설치하고 있는데, 국장이 의장이 되고, 국 소속 과장 전원과 다른 국의 일부 과장이 참여하여 위원이 된다.

3) 대합의부

대합의부는 연방회계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의장인 원장, 부원장, 국장 전원 그리고 3명의 과장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서기직을 수행할 2명의 과장이 추가된다. 대합의부에 참여하는 3명의 과장과 2명의 서기직은 원장이 임명한다. 대합의부는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연방회계감사원 업무 규칙에 따라 지명되는 2인의 국장과 2인의 과장(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된다. ‘대합의부’는 구성원 2/3 찬성으로 또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에는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속한 국장급 위원 1명이 참여하여야 한다.

Ⅲ. 연방회계감사원의 주요 활동

1. 감사 종류와 준비 과정

1) 감사 종류

연방회계감사원 감사의 종류에는 통제 감사, 일반 감사, 중점 감사, 횡적 감사, 방향 감사가 있다. 통제 감사는 연방회계감사원의 과거의 결정이나 의회의 결정을 감사 대상 기관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일반 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의 예산 및 경제 운영에 대한 포괄적 감사로 연방회계감사원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다. 중점 감사는 시간적 또는 사안적으로 제한된 감사 대상에 대하여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감사하는 것이며, 횡적 감사는 해당 기관의 대표적 선정 비교를 통하여 제한된 업무 범위 내에서 행정 작용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향 감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 절차, 발전 방향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로, 향후 실시될 감사에 대한 준비로서 행해진다.

2) 감사 준비

감사는 초안 작성, 전문가 참여, 감사의 예고, 감사의 개요 설명, 실행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감사는 담당 과장이 중심이 되어 계획, 추진되며, 감사 과장과 직원은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시기 등을 확정하여 감사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는 부서장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사안이 복잡하여 내부 인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전문가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까지 감사가 결정되면 연방회계감사원은 사전에 감사 대상 기관에 서면으로 감사를 예고한다. 여기에는 감사 대상 기관의 명칭, 감사 기간, 감사 팀장의 성명과 직책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를 실행하기 전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감사에 관한 기본적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감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해야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이 어떻게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사 직원은 현지 감사에서 감사 초안의 방향 내에서 감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결정을 취하고 감사를 시작한다.

감사는 초안 작성, 전문가 참여, 감사의 예고, 감사의 개요 설명, 실행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감사는 담당 과장이 중심이 되어 계획, 추진되며, 감사 과장과 직원은 감사 대상 기관, 감사 시기 등을 확정하여 감사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는 부서장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 감사 과정

1) 정부 예산에 관한 조언

1969년 연방예산법 개정 이후,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 부서별 예산안 수립, 특히 부서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열리는 해당 부서들과 연방재무부 회의에 참여해 왔다. 이 회의에서 연방회계감사원 감사위원들은 감사를 통해 얻어진 경험을 부서 예산수립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매년 연방회계감사원은 재무 규정과 제도에 대하여 자문가의 입장에서 활동하며, 중대한 재정적 결과가 있는 경우 법안의 입안 과정에도 참여한다. 구체적인 활동 상황 및 내용은 연간 보고서에 하나의 별책본으로 요약된다. 더불어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의회의 예산위원회 회의에도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의회의 1차 예산 심의 후에 열리며, 위원회의 구성원과 해당 부서, 그리고 연방재무부가 참여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의 정부 조언 사례를 살펴보면, 1999년부터 독일 정부는 독일을 해운 중심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톤세 제도²를 도입하여 선주들의 영업상 수익에 대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독일 연방감사원은 2006년 톤세 제도로 인해 감소한 연방 수입이 12억 8,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언급하면서 톤세 제도에 따른 세금 면제에 대한 규모와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선주협회는 독일 감사원의 톤세제 폐지에 대한 논리가 비현실적이며 톤세 제도 없이는 독일 국적 선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반박하였다(최영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 346호, 2006).

2) 재무 감사

연방회계감사원은 각 부처들이 연방예산법에 따라 재정관리 규정과 원칙을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자금을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관은 연방법에 따라 감사를 받게 될 기관에 감사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며, 예산을 법률에 따라 집행했는지 확인한다. 자금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했는지, 더 적은 자원으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이미 완료된 회계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계약의 입찰과 계획 과정을 감시하고 계약서

매년 연방회계감사원은 재무 규정과 제도에 대하여 자문가의 입장에서 활동하며, 중대한 재정적 결과가 있는 경우 법안의 입안 과정에도 참여한다. 구체적인 활동 상황 및 내용은 연간 보고서에 하나의 별책본으로 요약된다.

모든 연방부처와 행정기관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 사항을 연방회계감사원과 연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연방회계감사원은 일곱 개의 회계감사청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준수와 돈의 가치 등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업무를 보충하고 있다. 지역 회계감사청은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부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문서나 파일도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제재 조치

모든 연방부처와 행정기관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 사항을 연방회계감사원과 연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공직자가 규정이나 형법을 위반한 경우,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검사나 판사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 징계를 받도록 한다.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법원에서는 규율을 어긴 사람들이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죄의 과중에 따라 벌금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형법상의 범죄에 대한 징계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다.

4) 보고

연방회계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매년 연방의회와 연방상원 그리고 연방정부에 의견서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차 보고서는 의회가 정부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고서에는 감사 과정 중에 지적되었던 사항과 권고 사항, 관련 부서의 해명, 위원회의 결정, 검사 성과 또는 현재 상황 등으로 구성된다(연방예산법 제97 조).

연방회계감사원은 의견서와 임시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된 재정관리 문제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30개의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의회가 재정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연방회계감사원은 의회위원회와 세출위원회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연방회계감사원은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타 기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한 예로 독일회계감사원이 2012년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독일연방은행에 대해 국외 중앙은행에 보관중인 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물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독일연방은행은 보유금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본부 이외에, 뉴욕연방준비은행, 프랑스중앙은행 등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그간 이에 대한 실물 확인 검사는 하지 않았다. 연방

회계감사원의 보고 내용에 대해 독일연방은행은 이를 가능한 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유금은 3개국 중앙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며, 연방회계감사원이 요구하는 현장 검증은 중앙은행들의 '관행'에 어긋난다고 발표하면서 구체적 실행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 IV. 주 감사제도 】

지금까지는 연방의 감사 기관인 연방회계감사원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다. 16개 주는 모두 고유의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권과 행정권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각 주는 감사 기관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 바로 주회계감사원이다. 즉, 모든 주는 자체적으로 주회계감사원을 두고 주 차원의 회계 및 재정 감사를 하고 있다. 주회계감사원의 법적 지위, 주요 임무와 역할 등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그것과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은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 차원의 감사기관이며, 주회계감사원은 주 차원에서 감사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모든 주의 주회계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주 행정부 또는 입법부 및 연방회계감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한다. 즉, 주회계감사원은 연방회계감사원의 하부기관 또는 소속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두 기관은 감사 활동과 관련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하고 있다.

모든 주는 자체적으로 주회계감사원을 두고 주 차원의 회계 및 재정 감사를 하고 있다. 주회계감사원의 법적 지위, 주요 임무와 역할 등은 연방회계감사원의 그것과 동일하다. 단지 차이점은 연방회계감사원은 연방 차원의 감사기관이며, 주회계감사원은 주 차원에서 감사 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후주|

- 1) 독일 공무원의 직급군은 크게 고급직 공무원, 상급직 공무원, 중급직 그리고 단순직 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각 직급군에는 다시 여러 단계의 직급이 있다.
- 2) 틈새 제도란, 해운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상의 이익이 아니라 운항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선박의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해운기업에서는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고, 환위험을 받을 우려가 적어 세금 절감의 효과도 있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스벤 슈베어젠스키,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정범구 (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4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Commercial use of all media publish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 (FES) is not permit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FES.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발간한 모든 출판물은 FES의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